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6616 배당이의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피 고 1. C

2. [redacted]군

3. [redacted]

4. D

5. [redacted]공단

변 론 종 결 2015. 6. 4.

판 결 선 고 2015. 6. 18.

주 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redacted]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순위 5번의 배당액 93,984,657원을 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순위 6번의 배당액 118,013,616원을 211,998,273원으로 각 경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5

한다.

3.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주식회사 B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취지 : [redacted]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2. 작성한 배당표는 이를 모두 삭제하고 원고 A에게 871,324,62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의 예비적 청구취지 : [redacted]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순위 2번의 배당액 260,000,000원을 130,00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순위 5번의 배당액 93,984,657원을 0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순위 6번의 배당액 118,013,616원을 341,998,27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F 소유의 경기 [redacted]군 G 전 6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07. 8. 10. 접수 제22222호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5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8. 17.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22.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C는 [redacted]지방법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1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260,000,000원 및 이자 93,984,657원을 신고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4. 8. 12.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71,324,623원에 관하여 당해세의 조세채권자인 피고 [redacted]군에 9,928,510원을, 당해세의 조세채권자인 피고 [redacted]국([redacted]세무서)에 3,817,78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26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redacted]군에 70,703,160원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D에게 273,083,219원을, 피고 C에게 93,984,657원을, 원고 B에 잉여금으로 각 32,869,970원(압류권자 피고 [redacted]군), 2,750,751원(압류권자 피고 [redacted]험공단), 6,172,960원[압류권자 피고 [redacted]국[redacted]삼세무서)], 118,013,61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원고 A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redacted]지방법원 2011가합1788)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5

고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06879, 대법원 2013다43109)에서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4. 6. 1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주위적 청구)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피고 [redacted]공단의 본안전항변

원고 A은 담보가등기권자로서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참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담보가등기권자임을 주장하는 원고 A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가등기로서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원고 A은 2010. 11. 29.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5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신고하였을 뿐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이 이 사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채권은 대여금 130,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대여 당시 피고 C와 원고 B는 대여금의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30,0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30,000,000원만 배당받을 수 있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순위 2번의 배당액 260,000,000원을 130,000,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순위 5번의 배당액 93,984,657원을 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순위 6번의 배당액 118,013,616원을 341,998,273원으로 각 경정하여야한다.

나. 판단

1) 배당순위 2번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08. 7. 15. B에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액면 260,000,000원, 발행일 2008. 7. 14.로 된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원고 B가 피고 C에 대한 위 채무금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5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30,0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당순위 5번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는, 배당순위 5번의 배당액은 어음금 26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2008. 7. 14.)부터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2014. 8. 12.)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일람출급 약속어음은 그 어음상에 이자의 약정 및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고(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약속어음발행인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기 이전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4797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이자의 약정 및 이율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피고 C가 원고 B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피고 C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게 배당순위 5번으로 93,984,65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원고 B에 대한 배당순위 6번의 배당액 118,013,616원을 211,998,273원(= 118,013,616원 + 93,984,657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05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 장영채

판사 김동희